

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강 동 길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
□ 본 조례의 근거에, 출자·출연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 절차를 규정한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를 추가하여, 모든 출자·출연기관에 대하여 본 조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,

출자·출연에 대한 의회 동의 및 보고 절차와 동의안 제출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신설하여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을 명확히 하며,

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한 임원 등의 임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자·출연하는 등의 사유로 이를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본 조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등 출자·출연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